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5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3월 30일, 김지환 의원 등 32명
상정일자	제32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8년 4월 1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주요 개정내용	•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교육위원회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4월 10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30일, 김지환 의원 등 32명

나. 회부일자 : 2018년 4월 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32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8년 4월 10일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후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도시환경위원회 김지환 의원)

가. 제정이유

-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교육감은 매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다. 교육감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 등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3.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박춘금)

-----[별첨 1]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첨부서류

※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 [별첨 2] 참조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수석전문위원 : 박 춘 금

I.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

-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음.

II. 예산 및 비용추계

- 본 제정조례안은 재정수반 요인이 발생하나, 안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 추계가 불가능하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III.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1. 입법예고결과 : 1건 (과주소방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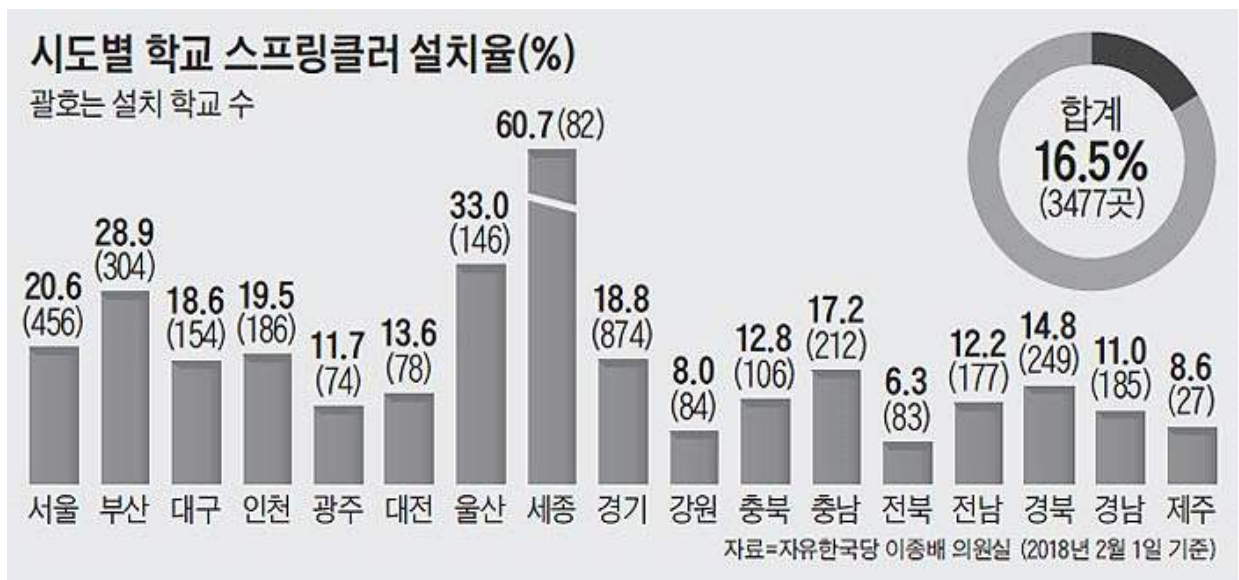
2. 관련부서 :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재난예방과

IV. 조문별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정의로서 본 조례안에서 다루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조례」에 따라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시 화재 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 안 제5조는 교육감이 매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안 제5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였음

V. 종합 검토의견

- 최근 잇달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같은 대형 참사의 원인으로는 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가 지적되고 있음. 더욱이 미성년의 학생이 대규모로 밀집해 있는 학교의 경우엔 보다 세심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으나 그동안 입법미비와 예산부족으로 인해 정작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전국 평균 16.5%에 머물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도내 전체 학교 4,655개교 중 874개교(18.8%)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309개교(24%), 중학교 228개교(36%), 고등학교 281개교(59%)와 유치원은 2,258 곳중 단 39 곳(1.7%)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임
-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이처럼 전국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규정한 스프링클러 설비 의무설치 대상물에서 학교가 빠져 있기 때문에, 학교는 단지 의무설치 대상물이 아닌 보편적 설치 기준 건물에 해당되어,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면 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시도교육청에 강제할 수 없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임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에 대해선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하며, 교육부에서도 별도의 예산지원을 통해 각급 학교가 최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병행

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스프링클러 신규 설치 실적은 2017년 초등학교 4개교, 2018년 2개교에 각각 8억7천만원, 6억7천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자녀를 둔 도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소방서와의 거리, 석면공사 등 공사예정 학교 등 시급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스프링클러 설비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 본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내 학교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급 학교가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가 분명하며, 조문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어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종합검토 의견서

- 본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제7조제2항3호에 따른 교육안전 관련 제반 법령에서 정하는 이행 사항을 일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학교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의 실태조사 실시, 교육감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등 화재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화재사고”란 불로 인하여 사람이 사상되거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학교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
2. 학교 화재사고 대비 소방훈련
3. 그 밖에 학교 화재사고 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 시설 및 소방시설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